

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-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



상호협력협약서 iACT

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(이하 ‘양관’이라 함)은 ICT융합산업 활성화 및 상호 협력관계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양 기관이 협약 당사자로서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분야) 본 협약서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의 사항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은 긴밀히 협력한다.

1. ICT융합산업 분야 공동 연구개발 사업 추진
2. ICT융합 기술개발 지원 및 확산을 위한 장비 활용 지원
3. ICT융합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인적 교류 협력 추진
4. ICT융합산업 분야 공동 기술사업화 및 산학협력 사업 추진
5.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과의 연계·협력에 관한 사항
6.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호협력 사항

제3조(협력창구) 양 기관은 본 협약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사무 전담부서를 통해 구체적인 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.

제4조(비밀유지) 양 기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사항이나 정보 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.

제5조(협약의 변경) 양 기관은 상호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6조(해약) 양 기관은 상대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해약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이득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.

1.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심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
2. 양 기관의 협약서 상의 협력분야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
3. 기타 양 기관이 스스로 해약을 원하는 경우

제7조(효력발생 및 협력기간) 본 협약서의 효력은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2년간 유효하고, 종료일 3개월 이전에 해약 서면통보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2년씩 연장된다.

양 기관은 본 협약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각각 서명한 후 1부씩 보관한다.

2015. 08. 20.



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

단장 이덕영

이
덕
영

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

iACT

원장 김현덕

김
현
덕

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
경북대학교 글로벌프라자